



대전광역시 유성구



수신 공동주택 관리주체 귀중
(경유)

제목 공동주택 경비, 청소원 휴게시설 실태조사에 따른 조치결과 제출 요청

1. 귀 공동주택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28조의2(휴게시설의 설치),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의2 및 시행규칙 194조의2에 따라 청소 관련 종사자 및 아파트 경비원이 10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근로자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.
3. 이에 따라 2026년 상반기 실태조사 결과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관리가 필요한 사항을 알리오니,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을 붙임 양식에 따라 **2026. 10. 7.(수)**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4. 아울러 휴게시설의 설치·관리기준을 보내드리니 기준에 맞게 휴게시설을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* 회신방법: 붙임양식에 작성 후 전자메일(gun6345@korea.kr)로 회신

* 붙임서식은 유성구 공동주택과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기 가능

- 붙임
1. 휴게시설 실태조사 결과 1부.
 2. 공동주택 단지 내 휴게시설 설치 현황(양식) 1부.
 3. 휴게시설 설치·관리기준 1부. 끝.

대전광역시유성구청장



주무관	이건희	공동주택지원팀	장	강기호	공동주택과장	전결 2026. 10. 6.	김학수
협조자							
시행	공동주택과-1006	(2026. 10. 6.)			접수		
우	34139	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(어은동)			/	www.yuseong.go.kr	
전화번호	042-611-2038	팩스번호	041-611-2137	/	gun6345@korea.kr	/	비공개(7)
개인정보는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반드시 파기하세요							